■ 군 주거지원 사업 운영 훈령 [별지 제1호 서식]

입주자 준수사항 및 서약서

※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계급	군번
	소속	주소

본인은 (　　)부대 주거시설(관사, 간부숙소) 입주를 신청하며 아래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.

1. 본인은 아래 규정에 따른 관사(간부숙소) 입주자격을 모두 구비하였음을 확인합니다.
   가. 관사 : 제10조 / (　)예규
   나. 간부숙소 : 제36조 / (　)예규
2. 본인은 관사(간부숙소) 입주 중 퇴거대상이 되었을 때 퇴거규정에 의해서 퇴거하겠으며, 퇴거규정 미준수 시에는 아래와 같은 제재도 감수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.
   가. 현　역 : 퇴거지연관리비 징수, 6개월 초과 및 연체 시 중앙공제의뢰 및 징계회부
   나. 전역자 : 퇴거지연관리비 징수, 소송 제기
   ※ 퇴거지연관리비 금액 : (　)예규 별표 참조
3. 본인은 주거지원과 관련된 개인 신상변동(전속, 파견, 전역, 휴·복직, 부양가족 상실 등) 발생 시 관리부대에 즉시 통보하는 등 주거지원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.
4. 본인은 관사(간부숙소) 입주 시부터 퇴거 시까지 (　　)부대 군 주거지원 및 운영규정을 준수하겠습니다.
5. 입주대기기간 동안 자가 보유 확인 시 입주대기자 명단에서 직권으로 삭제할 수 있다.
6. 입주 후부터 퇴거 시까지 본인 부주의에 의한 파손은 100% 보수 및 변상 조치한다.
7. 입주건물 및 관사(간부숙소) 단지 시설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한다.

운영예규 요약

○ **입주 전 확인사항**
- 시설물 확인 및 확인서 서명, 입주자 준수사항 및 운영예규 관련 사항 확인

○ **퇴거사유 : 세부사항은 (　)예규 별표(　) 참조**
- 제10조 및 제36조에 따른 입주자격 상실 시
- 전속, 파견, 전역(제적, 퇴역) 등
- 다른 관사나 간부숙소 입주 또는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을 받을 시
- 근무지역 내에 구입, 상속 등으로 자가 보유 시(부양가족 포함)
- (관사) 주민등록표상 부양가족 상실 시(실제 미거주자 포함)
- 부정한 방법으로 관사나 간부숙소 입주, 민간주택임대자금 지원금액 및 주택수당 부당 수급 시
- 기타 관리부대 준수사항, 관련규정 미준수로 부대위원회에서 퇴거 결정 시 등

○ **퇴거기한 : (　) 예규 별표 참조**

○ **퇴거절차**
- 퇴거 대상자는 퇴거일 (　) 일전에 부대 담당자(관리소장 등)에게 퇴거 사실을 통보
- 퇴거 전에 시설물 파손여부를 확인 후 개인 변상여부 등의 확인서 작성

○ **관리비 납부**
- 발급된 고지서에 따라 (　) 관리사무소에 매월 (　) 까지 지정된 은행에 관리비 납부

○ **보수비 부담기준 : (　) 예규 별표 참조**
- 입주자 개인 부담 :
- 관리비 부담 :

년　　월　　일

신청인 성명　　(서명 또는 인)

(　　) 부대장 귀하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 또는 중질지80g/㎡]